



지정후원사업, '한걸음 바르게!'

「우리 동네 청년, 한시적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담당자: 정다운 과장

T.02-734-0661~2

우리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실업난 또는 취업난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거주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관내 거주 재학생 및 졸업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안내

가. 사업기간: 2022년 7월 ~ 10월

나. 지원대상: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총5가구 *생년월일 기준: 1983년생 ~ 2004년생

다. 지원내용: 한시적 월세 지원(4개월간) *월 250,000원 × 4개월 = 1,000,000원(총 지원액)

라. 지원방법: 월 월세 납입 확인증(이체확인서 등) 제출 → 대상자 온라인 계좌로 입금

2. 신청 안내

가. 신청 대상자 요건

① 종로구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60%이내인 청년 *1983년생 ~ 2004년생

②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고가주택 거주 청년 제외

구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 총 소득액
1	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30%	252,825,560
2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40%	272,273,680
3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5만원 이하	150%	291,721,800
4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160%	311,169,920

※중위소득100% = 1,944,812원 (기준중위소득: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자료)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순위〉

- 종로거주 2년 이상인 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대상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혜액 외 납부금액이 20만원 이상인 자
- 지자체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지원 이력이 없는 자(과거 있을 경우. 없는 자 우선 선정)

〈제외 대상자〉

- 주택소유자인 경우
- 일반 재산 총액 1.5억을 초과하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 2022년 8월부터 신청 가능한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예정자의 경우 신청불가*중복수혜불가

나. 신청기간 : 2022년 6월 29일(수) ~ 7월 8일(금) 15시까지

다. 추천방법 : 이메일(lovejcswhanmail.net) 접수

구분	필요서류	비고
대상자	신청서 및 자가진단 확인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사본 1부. 등기부등본 1부. 건강보험납입증명서(최근6개월)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임대차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임대인의 성명이 다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사본 필요) 또는 고시원등의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인과 임대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보증금, 월세금액, 계약날짜)

3. 지원 일정: 7월 ~ 10월 ※월세 납입금 확인 후 지원

4. 비고: 추후 선정자는 월세 납입금 이체확인증 등 제출 필요

5. 문의: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정다운 과장 02.734-0661~0662